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영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601

발의연월일: 2024. 7. 10.

발 의 자:서영교・박지원・이해식

박희승 • 이용우 • 박홍배

박홍근 • 이정헌 • 강유정

김성회 의원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선원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·자녀·부모 등의 유족 순서에 따라 장제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장제비를 지급할 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해 실제로 장제를 한 자에게 장제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장제비는 장제를 치른 자에 대하여 장제에 소요된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이나, 현행법은 실제 장제를 치렀는지 와 관계없이 유족 순서에 따라 장제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장제 비 지급의 불합리성이 문제가 되고 있음. 또한, '장제'라는 용어도 그 입법취지와 실례에 따라 '장례'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함. 실제로 「산 업재해보상보험법」, 「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」상 규정에도 '장례'라는 용어를 사용하며, 장례를 직접 지낸 자에게 지급하도록 규 정되어 있음.

이에 '장제'라는 용어를 '장례'로 변경하고, 실제로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(안 제100조,

제103조, 제152조의2 및 제170조).

법률 제 호

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0조의 제목 "(장제비)"를 "(장례비)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"을 "장례를 지낸 유족"으로, "장제비(葬祭費)"를 "장례비(葬禮費)"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장제비"를 각각 "장례비"로, "장제"를 "장례"로 한다.

제103조제1항 중 "장제비"를 "장례비"로 한다.

제152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"장제비"를 각각 "장례비"로 한다.

제170조제15호 중 "장제비"를 "장례비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0조(<u>장제비</u>) ① 선박소유자는	제100조(<u>장례비</u>) ①
선원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지	
체 없이 <u>대통령령으로 정하는</u>	<u>장례를 지낸 유족</u> -
<u>유족</u> 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20	
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<u>장제</u>	<u>장</u> 례
<u>비(葬祭費)</u> 로 지급하여야 한다.	비(葬禮費)
② 제1항에 따른 <u>장제비</u> 를 지	② <u>장례비</u>
급하여야 할 유족이 없는 경우	
에는 실제로 <u>장제</u> 를 한 자에게	<u>장례</u>
<u>장제비</u> 를 지급하여야 한다.	<u>장례비</u>
제103조(다른 급여와의 관계) ①	제103조(다른 급여와의 관계) ①
제94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	
정에 따라 요양비용, 보상 또는	
<u>장제비</u> 의 지급(이하 "재해보상"	<u>장례비</u>
이라 한다)을 받을 권리가 있	
는 자가 그 재해보상을 받을	
수 있는 같은 사유로 「민법」	
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	
법에 따른 재해보상에 상당하	
는 급여를 받았을 때에는 선박	
소유자는 그 가액의 범위에서	
이 법에 따른 재해보상의 책임	
을 면한다.	

② (생략)

제152조의2(임금채권 등의 우선 변제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선박 소유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 권(質權)·저당권 또는 「동산·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」 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·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 어야 한다. 다만, 질권·저당권 또는 「동산·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담보권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·공과금에 대해 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1.·2. (생략)
- 3. 제94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양비용, 보상 또는 장제비
- 4. (생략)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선박소유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·저당권 또는 「동 산·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 률」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

② (현행과 같음)
제152조의2(임금채권 등의 우선
변제) ①
1.·2. (현행과 같음)
3
المالية
<u>장례비</u>
4. (현행과 같음)
②

보된 채권, 조세·공과금 및 다 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 야 한다. 1.·2. (생략)

- 3. 제94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양비용, 보상 또는 장제비

제170조(벌칙) 선박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1. ~ 14. (생 략)

15. 제100조를 위반하여 <u>장제비</u> 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16.·17. (생략)

1.·2. (현행과 같음)
3
<u>장례비</u>
제170조(벌칙)
1. ~ 14. (현행과 같음)
15 <u>장례비</u>
16.·17. (현행과 같음)